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41호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2012. **3**

CONTENTS

2012년 3월. 제141호



이달의 주요뉴스
 03 언론중재위원회-서울지방법원사회 업무협약 체결,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내 마음의 서재
 04 궁금증으로부터 체계화로

직원마당
 06 회상

조정후기
 07 포털뉴스도 조정중재 대상

토론회 개최
 08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보상, 얼마가 적당할까?

기고
 09 정부에도 '동네 아저씨' 전략이 필요하다

판례토크
 10 선거운동은 정말 자유로운가?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11 U2 「Achtung Baby」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서울지방법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사진에서 왼쪽 세 번째)와 서울지방법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사진에서 왼쪽 네 번째)는 2월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배려계층과 열악한 여건에 있는 언론사에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며,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정사회 구현의 차원에서, 조정중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이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균형의 조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자 간의 화해, 조정이 보다 의미있게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오늘 협약으로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이 출범하며,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증진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무료변론 서비스에 대한 지원대상, 절차 등을 담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궁금증으로부터 체계화로



김 광 옥 교수

現 수원대 법정대학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언론중재위원 (2002. 3. ~ 2005. 3.)
한국방송학회 회장
중앙일보 동경지사장, 부국장
중앙일보, 중앙방송 프로듀서

‘마음의 서재’라고 하는 것은 살며 읽어온 책 중 어떤 대목이 마음속에서 이따금 떠오른다는 것이리라. 그런 책이 있을까?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어서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책을 왜 읽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유아원에 서는 글책이 아니라 그림책부터 시작한다. 그 이전에 인사며 손짓 발짓 등 몸짓언어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6살 이후 성장기까지 주로 책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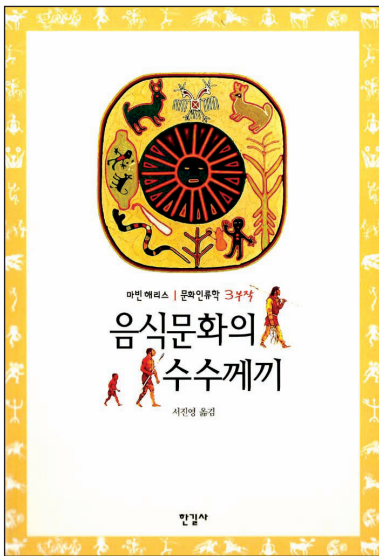
중년 이후는 책이 뒤로 밀릴 수가 있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라디오, 영화, 음악, 온갖 공연, 전시회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와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사실 성장해서는 책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매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열 번 강조하여도 잔소리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첫째, 책은 능동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내용의 책을 구해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다는 근접성과 시의성에 있다. 아무리 좋은 다큐프로그램이라도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볼 수 없지 않은가. 둘째, 관심의 폭이 무한대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하여 책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접

속 시간대,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비용, 보관과 반복성, 이윅과 나누어 보기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

내 마음에 하나 늘 접혀 있는 책은 ‘음식문화의 수수께끼’(마빈 해리스, 1992)다.

정작 책의 중요성 때문에 ‘마음의 책’ 이야기가 늦어졌는데 내 마음에 하나 늘 접혀 있는 책은 ‘음식문화의 수수께끼’(마빈 해리스, 1992)다. 한 예로 인도인은 왜 소를 잡아먹지 않고 신성시 여기는 것일까 하는 점이 한 장(章)으로 나온다. 힌두교도들은 암소를 신으로 모시며 신성시 여긴다. 근원에는 땅을 경작하고, 우유를 제공하고, 똥은 연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이를 근간으로 우유, 버터, 오줌, 똥을 섞어 신성한 ‘넥타’를 만들어 조상(彫像)들과 예배자들에게 뿌리거나 처덕처덕 바르는 의식도 나온다. 종교를 포함한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대목을 통해 당시 받아들인 감흥은 세계의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없이 ‘한심하다든가, 이해가 안 된다든가’ 하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 책이 발간된 것은 1978년이었으나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1992년이니 14년의 차이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늦었을까. 요즘은 인기 있는 책은 세계 동시에 출간되고 미국영화의 경우는 한국에서 먼저 상영되기도 한다. 바로 90년대는 일본 NHK 위성 방송이며 홍콩의 스타 TV가 시작된 글로벌화 초기 단계였다. 세계를 MTV 등 팝으로 균일화해 가면서도 각 나라의 문화나 풍습


을 바르게 이해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치 세계화에 늦어져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당시는 방송계에서 학교로 옮긴 때이고 전공이 커뮤니케이션 역사와 방송문화였고 방송이란 곧 ‘그 사회와 인간, 그리고 역사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인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있었다. 문화인류학의 책이었지만 바로 세계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너와 내’가 다른 데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종교적 의미, 가치체계, 인지체계와 다른 유물론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서 보면 역사의 이데올로기며 기호학적 신화분석 등의 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한 일이었다.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주위에 수백 권의 책이 있으나 대개는 마스크현상을 설명하는 책들이고 이런 유의 책 수명은 약 3년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원론이다. W. J. Ong의 ‘구술 문화와 문자문화’, 이외에 H. Innis 책, J. D. Stevens와 H. D. Garcia의 ‘Communication History’ 등이 아직도 옆자리에 있다.

책을 읽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궁금증이다. 호기심은 경험을 갖게 하고 궁금증은 책을 찾고 실험을 하게 만든다. 지식은 한 분야의 관련 서적들을 통하여 내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책과 관련하여 10~20대는 학습서적과 소설·시, 30~40대는 지식과 경험에 대해, 50~60대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 추구해 온 것 같다. 책을 읽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궁금증이다. 호기심은 경험을 갖게 하고 궁금

증은 책을 찾고 실험을 하게 만든다.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의 기호를 읽게 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지식을 쌓게 하지는 못한다. 지식은 한 분야의 관련 서적들을 통하여 내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80년대 일본에서 언론계 직장에서 근무한 일이 있는데 당시 일본에는 ‘일본이란 무엇이냐’에 관한 책이 1,500여 종 있었다. 그중 몇 권을 읽어 내재화하려 했다. 루스 베네딕트(Ruth F. Benedict)의 ‘국화와 칼’, 나카네 치에(中根千枝)의 ‘수직사회의 인간관계’는 그 중 기본이 되었다. 그 밖에 E. T. Hall의 ‘침묵의 언어’는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유형의 구조’를 제공했다.

근간에 조선회사에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륙 초원의 커뮤니케이션 역사에 세계 해양의 역사를 보태기 위하여 주경철의 ‘대항해 시대’ (2008)가 유용했다. 전공인 초원의 커뮤니케이션 역사에 해양을 보태어 새롭게 구성해 본 것이다. 요즘 관심사는 ‘왜 우리나라는 물질문화에 약했는가’, ‘한·중·일의 문화차이의 근원은’ 등의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SNS의 기계적인 현상이 아닌 ‘역사 속 인간의 자기표현과 사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SNS’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궁금증이 있는 한 책은 계속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체계화하려 노력해 갈 것이다. 



회상



박진규
정책연구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진학을 앞둔 시점, 당시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 전교 10등 이내의 성적, 큰 키, 관창은 얼굴, 운동에 출까지... '난 잘난 놈이야' 라는 거만한 생각을 하며 살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거만함을 하늘은 용서하지 못한 것일까? 나 예전 곧 큰 시련이 다가왔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다. 1998년 4월 7일, 마냥 즐겁던 한 교실의 스피커에서 '1학년 7반 박진규 학생 양호실로 오세요.'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그 방송이 있던 지 2주일 후, 난 거짓말처럼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7개월여 간의 치료 후,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성적은 점점 떨어져만 갔다.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의 편애를 받는 우등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도 참석하지 않는, 단체생활의 틀을 깨는 선생님들에겐 눈엣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갔다.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 날보다 학교에서 초라한 내 자신을 보이기 싫어 학교에 가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고 아예 중간, 기말시험을 치르지도 않았으며 방황도 참 많이 했다. 장학생 입학, 전교 꼴찌 졸업, 이게 내 고등학교의 성적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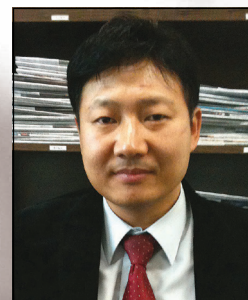
나의 20대 초반도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다행이라면 고교생활을 망쳐놓은 병마를 이겨냈다는 점 정도겠다. 지금은 신약이 많이 나와서 완치 확률이 높지만, 당시에는 20%정도라고 했는데 그 적은 확률에도 나는 완치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딱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 몸이 좋아지는 바람에 참 운 좋게 군대에 가게 되었지만, 불운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다. 유격훈련을 받던 도중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한 것이다. 남들은 '군 면제 받으니 부럽다.' 라고 했지만 나 자신은 군대조차 날 거부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었다.

재활을 하며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저 목표도 없이 시간만 죽이며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던 24살 어느 날...어머니께서 날 방으로 부르시곤 나지막한 목소리로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힘든 것 같다"며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고 가장 많이 운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남들보다 뛰어난지 않았지만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기간엔 운전면허 강사, 컴퓨터 수리, 모텔하우스 안내, 영화 엑스트라 등등...참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루하루의 의미 없이 보내진 않았던 것 같다. 부정적이고 걱정 많은 성격을 고치기 위해 밝게 웃는 연습도 많이 했다. 가끔 고교 시절 사진을 꺼내보면 웃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고 증명사진의 표정조차도 지금과 사뭇 다른걸 보면 많이 고쳐진 듯해서 뿌듯하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공부한 성과를 얻기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다. 조금씩 나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스스로 걷어내고 있는 모습이 하늘은 기특했던 것일까?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운 좋게도 모선배의 결혼식 축사 내용 중 '신의 직장'이라고 언급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입사했고, 2010년부터 그저 멀찌감치 바라만 봤던 사람과 달달한 연애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된다. 이 행복이 한 겨울밤의 꿈처럼 깨버리는 것은 아닐까하고. 하지만 이젠 과거처럼 두려워 피하지 않겠다.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시련과 어려움...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일들을 겪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내가 있는 거니까. 🌈

포털뉴스도 조정중재 대상



안 백 수
심리본부 전문위원

이제는 인터넷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우리가 PC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포털사이트(Portal Site)다. 포털사이트를 줄여서 흔히 포털이라고 하는데, 포털이란 용어는 원래 큰 저택의 현관문을 지칭했다. 그런데 근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이버 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버, 파란 등이 대표적인 국내 포털이고, 구글, 야후, MSN 등이 대표적인 국외 포털이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포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특히, 포털의 언론보도 유통기능은 포털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포털이 언론보도를 매개해줌으로써 우리는 신속하고도 간이하게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한 포털의 언론보도 유통기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적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작용은 존재한다. 포털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잘못된 보도까지도 걸잡을 수 없이 퍼져 피해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의 보도유통기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포털이 매개한 보도도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4,329건 중에 포털을 상대로 한 것이 1,351건이었다. 전체 조정사건의 31.2%만이 포털기사에 대한 것이다. 언론보도는 많은 포털이 중복해서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포털사를 상대로 한 조정 건이 일반 언론사에 비해 몇 배는 많아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첫째,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자 하지 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으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홍보활동이 강화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보도피해자들이 조정신청서 작성에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는다는 점이다.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경황이 없다. 그렇다보니 각 포털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조정신청할 여력이 없다며 원 기사 제공언론사만을 상대로 조정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는 작성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어 작성하기가 어렵지 않다. 신청서류 작성하는 데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째, 포털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절차를 통해 정정보도가 나가면 포털에도 똑같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는 경우도 많다. 얼핏 일리 있는 생각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가 정정 기사를 이행하고도 포털에는 송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포털과의 조정과정에서는 묵은 기사의 찌꺼기를 삭제하도록 한다던가, 별도의 정정 기사 모음코너에 정정보도를 게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포털기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은 이러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기회를 모두 포기하는 셈이다. 결국 피해당사자에게는 포털에 대해 조정신청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의 첩경이라 하겠다.

포털사건의 조정절차는 일반 언론사건의 그것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된다. 포털사건은 대개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해당 기사를 매개한 행위에 대한 다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의 출석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사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조정과정도 그리 어렵지가 않다.

이 자리를 빌려, 포털이 매개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뿐더러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당부한다.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보상, 얼마가 적당할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월 22일 프레스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직 기자, 주요 포털사이트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참석해 실제 조정사례를 통해 언론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취재현장에서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어느 정도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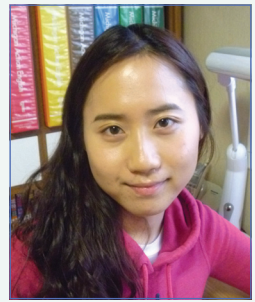
또한,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한 포털의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토론자들이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포털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고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적절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조정액은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다며 실제 피해에 부합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추구하는 조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남용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권성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포털이 언론피해구제의 측면에서 언론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액 제고는 장기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도 조정중재제도의 실무 개선 사항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정부에도 '동네 아저씨' 전략이 필요하다



민예림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대학생)

지난 2월 3일, 서울 외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는 이상한 ‘콘서트’가 열렸다. 객석에서는 끊임없이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진행자는 얇은 채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수상한 행사의 정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4회 미디어정책 포럼. 말하자면 정부 주최의 공식 행사에 자유로운 토크쇼 형식을 가미한 것이다. 좌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객석을 가득 메운 각계 미디어 전문가들은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느라 분주했다.

이번 포럼의 취지는 소셜미디어(이하 SNS)의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SNS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는 물론 언론이나 법제도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는 한국신문협회, 잡지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SNS의 확산이 우리 정

부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잘만 활용한다면 정책의 환경 적응력, 정치의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정부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결집하는 여론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는 정치적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이다’, ‘무슨 지역을 방문했다’는 식으로 SNS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은 그런 딱딱하고 사무적인 것들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전달할 때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수건을 두르고 운동하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주민들이 새로운 운동센터 건립을 바라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도록 유도한 일화는 SNS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화’ 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와 언론사 및 각계각층의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BOOK 이달의 책

소통; 미디어로 세상과 관계맺는 법

정여울 지음 | 홍익출판사 | 32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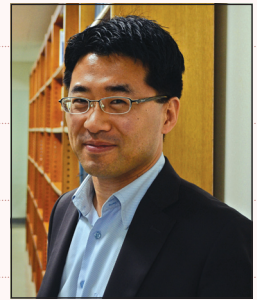


인터넷 기사 100개를 읽은 사람보다 오늘 일기 한 페이지를 쓴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스는 우리를 사건의 소비자로 만들지만, 일기는 우리를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드니까.”

문학평론가이면서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해 폭넓게 글을 써온 저자가 스마트폰, 포털사이트, 오디오 열풍 등 우리가 즐겨보는 영상과 인터넷 세상을 아우르는 생활 속 문화 전반을 성찰하는 책을 냈다. 미디어와 관련된 56개의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각 장마다 서로 다른 소재가 등장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예시가 담겨져 있다.

책은 ‘미디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달 자체가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묘사하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살아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을 해소하기도 하고, ‘언젠가 살아내야만 할 삶’을 여행연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단지 문화를 일시적이고 말초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보면서, 미디어를 “살아 꿈틀대는 인문학의 테마”로 파악한다. 우리가 쉽게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해버리는 미디어 속에 문화적 원동력이 숨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선거운동은 정말 자유로운가?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가 있는 올해 ‘공직선거법’에 자주 관심이 가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제58조 제2항에 이르러 다음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선거운동이 주체, 시기, 방법 모든 면에서 썩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선·총선·지선 3대 공직선거를 망라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총 17개의 장과 279개 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률이다. 이 가운데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은 전체 조문의 약 22%에 달하는 61개 조문에 달하는데 대체로 선거운동의 주체나 시기, 방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례로, 19세 미만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총선의 경우 13일, 대선 역시 22일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공직선거법이 표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무늬만 자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많이들 알고 있었지만, 작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선거운동금지’ 조항과 관련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2007헌마100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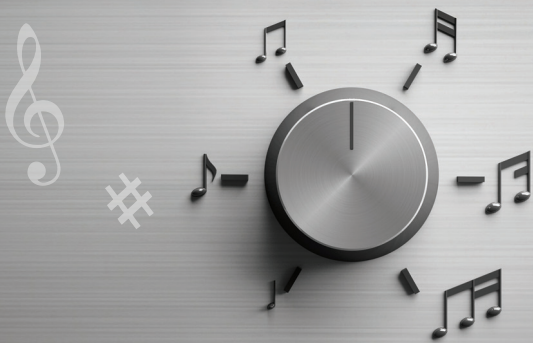
이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UCC, 블로그, SNS 등과 같은 각종 인터넷매체는 책자나 전단 등과 같은 각종 인쇄물과 유사하게 취급되었다. 그래서 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 인터넷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이나 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의 투표인증샷을 금지한 일이다. 이와 같이 규제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터넷매체를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현재의 결정이 있는 직후, 중앙선관위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인터넷선거운동의 상시화’가 허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은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의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소통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운동의 상시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원스런 현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실질적 부자유를 고수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근간은 여전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이외의 의사전달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앞에서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차별이 있지 아니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매체라 하여 위 입법목적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위헌결정 당시 소수의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들의 지적이다.

이들 소수 의견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선거법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무늬만 자유일 뿐인 현행 선거법 하에서 인터넷선거운동만 상시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일 수 있다. 이리다보니, 현재도 카카오톡은 되고 문자메시지는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 해석을 낸 중앙선관위 역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가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선거법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번 현재의 결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하나를 넘었은 뿐 갈 길이 아직 멀다. 무늬만 선거운동 자유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선거법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그에 앞서 돈선거, 관선거, 흑색선전,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선거풍토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선거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 선거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과 선거법의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이일환 (음악 칼럼니스트)

U2 「Achtung Baby」

1991년은 음악팬들에게 특별한 해로 회자되곤 한다. 아마 너바나(Nirvana)의 「Nevermind」, 프라이멀 스크림(Primal Scream)의 「Screamadelica」를 비롯해서 록음악사에서 중요한 앨범들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20주년을 맞이한 작년에는 이를 기념하는 20주년 음반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유투(U2)의 음반도 1991년에 발표된 음반 중 하나다. 당시 나는 그다지 진지한 리스너가 아니었지만, 이 음반을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1987년에 발표된 앨범 「The Joshua Tree」는 유투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다 줬다. 이 앨범의 성공을 바탕으로 밴드는 세계를 돌면서 공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유투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악의 새로운 흐름과 경향을 뱀파이어처럼 단숨에 흡수하였고, 자신들의 새로운 음악을 구상했다. 그리고 그 구상을 실제의 사운드로 구현해내기 위하여 베를린의 한자 스튜디오로 날아갔다. 그들이 브라이언 이노, 다니엘 라노어, 스티브 릴리화이트, 플러드와 같은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드림팀을 꾸려서 완성한 음반이 바로 「Achtung Baby」이다.

나는 이 앨범을 시간차 없이 바로, 그리고 즐겨들었던 것에 감사하는데 이유는 단순하다. 이 앨범이 너무나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음반을 두고 록과 일렉트로니카의 만남이라든지, 장르 혼용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공의 최대치라는 식으로 추앙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내가 매료된 것은 이 음악을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이다. 그것은 아마도 흔히 이야기하는 '동시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동시대성에 대한 가장 멋진 비유는 조르조 아감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성운은 그 빛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우리가 하늘을 어둠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이다. 전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오지만 그래도 빛을 내는 성운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 빛 말이다. 현재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려 애쓰지만 그럴 수 없는 이 빛을 지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 앨범

「Achtung Baby」는 아감벤의 비유처럼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은 빛을 끌어당겨서는 기어코 밤하늘을 밝혀버린 느낌이다. 그러니까 '동시대성'을 기어코 '유행'으로 만들어버린 기묘한 작품이기도 하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 상황이다. 역사학자인 야콥 부르트하르트와 말처럼 위대한 작품은 천재의 특별한 능력과 예술의 발전 단계의 적절한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세계가 탐험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대륙에서는 일렉트로니카와 힙합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그 베를린에는 데이비드 보위와 브라이언 이노, 이기 팝, 로버트 플립 등 쟁쟁한 뮤지션들의 전통과 기이한 울림을 가진 커다란 홀을 가진 한자 스튜디오 2가 있었다. 여기에 새로운 음악을 실험하던 젊은 프로듀서인 플러드까지, 정말 운 좋게 한 곳에 서로의 기운을 품은 채 모인 것이다. 이 음반에 가득한 고유한 앰비언스(Ambience)는 이처럼 특별한 능력과 적절한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 탄생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유투의 최근 음반들은 '박제된 신화'처럼 보이지만 20년도 더 된 이 앨범은 여전히 동시대적으로 느껴진다. 시간은 쏠살같이 흘렀지만 어떤 것은 제자리에서도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 🌈





법원 인사, 중재부장 10인 인사이동

성명	중재부	인사일	현직	변동사항
강영수	서울제3중재부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형천	경남중재부	"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장재윤	서울제1중재부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노정희	서울제6중재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채해	대구중재부	"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김재환	경기중재부	"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함종식	강원중재부	"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규	전북중재부	"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부상준	제주중재부	"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림	서울제7중재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퇴직

내일신문에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공약' 기고



박헌채 위원(서울제5중재부, 前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은 2월 3일 내일신문에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공약'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박 위원은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기보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중앙지방법변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월 30일 호텔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2012년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위 위원은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등 지난 2011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회원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격려했다.

강원일보에 '정(情)과 추억(追憶)의 가치' 기고



함종식 위원(강원중재부,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은 2월 8일 강원일보에 '정(情)과 추억(追憶)의 가치'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함 위원은 신뢰했던 사람과 송사를 겪으며 과거의 정과 추억마저도 훼손되는 것에 대해 '정과 추억은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포기할 사소한 것이 아니다'며 정성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대 '매체비평론' 강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강좌로 선정



이영원 위원(전북중재부,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강의하는 '매체비평론'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학생 신문읽기 지원 강좌로 선정됐다. 이 위원은 '중앙·지역 신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전반과 지역 사회 현안에 모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신문읽기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최초로 토론회 형식의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2월 17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내실을 기하고자 처음으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오광건 사무총장이 사례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양재규 정책연구팀장이 선거보도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참석 언론인들의 지역언론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12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교육 실시



2012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교육이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총 9개 대학 10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언론조정중재 및 기사심의 실습, 조정사례토론, 중재위원과의 대화 등의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겨울방학 중고생 인턴십 종료



위원회 겨울방학 중고생 인턴십이 2월 3일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도 실시되어 전국 78개교에서 2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위원회 인턴십은 앞으로도 확대 운영될 방침이며, 여름방학 일정은 7월 초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청소년 신문과 위원회 소개 인터뷰 연이어



오광건 사무총장은 2월 24일 '청의눈'(발행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과 인터뷰를 가졌고 위원회의 역할과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이진숙 홍보팀장은 2월 17일 '청신호'(발행처 : 광명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2012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4월 11일 실시될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위원장), 원병설(부위원장), 문명호, 박석대, 황의봉, 김택근, 이성섭, 이준웅, 조우성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사회공헌단, 도서 기증으로 나눔의 첫 손길

위원회 사회공헌단은 2월 29일 구세군영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책장과 함께 550여권의 아동도서를 기증했다. 전달된 도서는 권성 위원장, 노정희 중재부장, 사무처 직원 등의 기증으로 준비됐다. 위원회 사회공헌단은 앞으로도 옷 기증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사무처 인사 및 유공직원 표창

- ▲파견 [국방대학교] 조남태 (2012. 2. 6.자) ▲해외실무연수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안백수 (2012. 3. 12.자)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공적상 : 이진숙 홍보팀장, 이재범 ▲공개토론회 운영개선 및 발전 공적상 : 양재규 정책연구팀장, 이홍길

위원회 통계현황

2012년 2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월 20일까지 236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성립 48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건(동의 1건), 조정불성립결정 33건, 기각 4건, 취하 101건, 계류 49건이며, 성공률별로는 조정성공률 59.8%, 본안성공률 74.2%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81건, 인터넷신문 66건, 신문 56건, 방송 28건, 뉴스통신 5건이었다. 한편, 중재사건은 13건이 접수되어 모두 13건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기준일자 : 2012. 1. 1.~2012. 2. 20.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리 결과									성공률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조정 성공률	본안 성공률
			동의	이의	계속				심리전	심리중			
236	128	48	1			33	4		55	46	49	59.8	74.2%

$$\ast \text{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ast \text{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 25건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는 피의자 신원공개 14건,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4건,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3건, 자살 관련 보도 3건, 보도윤리 위반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7건, 일간지 5건, 뉴스통신 2건, 주간지 1건으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 현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발족된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공평성 및 형평성 위반 13건, 외부기고 위반 6건, 광고제한 위반 3건 등 22건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주의 9건, 권고 12건을 결정하였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2건이 접수되어 각하 1건, 취하 1건으로 처리되었다.

상담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월 20일까지 총 35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절차 안내 331건, 재상담 예정 65건, 타기관 안내 27건, 법적절차 안내 18건 등이며,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방송 97건, 일간신문 95건, 인터넷신문 85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42건, 주간신문 31건, 뉴스통신 18건, 잡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월 20일까지 22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는 인턴십 프로그램 11건, 언론사 4건, 교육연수기관 2건, 법무수습교육 2건, 대학 1건, 공·사기업 1건, 지자체 1건이다. 법무수습교육은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2주간 진행됐다.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The screenshot shows the Eye-Net website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Includes the Eye-Net logo and navigation links: 전자심리안내, 전자제출, 전자민원, 전자송달, 나의전자심리, 사건검색.
- Login Section:** Fields for 아이디 (ID) and 비밀번호 (Password), a LOGIN button, and options for 아이디/비밀번호 or 인증서로그인.
- Calendar:** A calendar for 2012.01 with a highlighted date (10th).
- Service Cards:** Three cards for 전자 실시간상담, 전자 조정신청, and 전자 중재신청, each with a brief description.
- Search Section:** A section for 사건검색 (Case Search) with filters for 연도 (Year), 연도 선택 (Year Selection), 처리결과 (Processing Result), and =선택= (Selection).
- Public Notice:** A section for 공지사항 (Public Notice) with a list of notices and their dates.
- Committee:** A section for 열린위원회 (Open Committee) with links to 사건검색, FAQ, 물고답하기, and 각종서식안내.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